

분실물(유실물) 처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웨이브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실물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여 분실물(유실물)의 효율적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실물(유실물)"이라 함은 웨이브파크 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점유이탈물을 말한다.
2. "분실자(유실자)"라 함은 습득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웨이브파크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지물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한다.
3. "분실물 접수"라 함은 웨이브파크 내 분실물(유실물) 습득자로부터 인수 받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반환인수"라 함은 웨이브파크에 접수된 분실물(유실물)을 분실자(유실자) 또는 습득물 소유자가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분실물(유실물)의 취급 원칙)

- ① 분실물(유실물)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분실/습득물의 종류, 습득 장소와 날짜, 시간을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입한다.
- ② 웨이브파크 내 에서 접수한 분실물(유실물)은 현장 웨이브파크 서비스운영팀에서 수합하여 분실물(유실물) 본인의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 그 분실물(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 인수증 작성 등을 하여 분실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분실물(유실물) 반환 인수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예외사항으로 손님의 요청으로 방문 수령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분실물(유실물) 접수 시, 홈페이지 내 공시된 분실물(유실물) 착불 택배 요청서를 작성하여 분실물(유실물) 문의 시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신청 시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③ 습득물 관리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인수증 서명 날인을 받고 물건을 반환한다.

제 2 장 분실물(유실물) 접수

제 4 조 (분실물(유실물) 접수)

웨이브파크 내에서 물건을 유실하였을 경우 웨이브파크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분실물 센터' 에 게시된 분실물(유실물)을 분실자(유실자)는 확인 후 문의한다. 습득자가 습득물을 신고할 경우는 서비스운영팀에서 직접 홈페이지 '분실물 센터' 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 3 장 분실물(유실물) 공지

제 5 조 (분실물(유실물) 공지)

① 분실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웨이브파크 서비스운영팀 담당자는 접수한 습득물을 웨이브파크 홈페이지 고객센터 분실물 센터 내에 습득한 날로부터 6 개월간 공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입력된 습득물(신분증, 신용카드 등), 고가물품, 귀중품 등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타인 반환 방지를 위해 정보 일부만을 작성하여 분실물 센터 내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

제 4 장 분실물(유실물) 처리

제 6 조(소유권 상실)

민법 제 253 조를 준용하여 분실물(유실물)이 접수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분실물(유실물)을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분실자(유실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제 7 조(긴급처리를 요하는 분실물(유실물))

다음의 각 호의 유실물은 웨이브파크 내 서비스운영팀 부서장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 및 홈페이지 분실물 센터 내 에는 게시하지 아니하고 관리한다.

1. 음식물
2. 인화물질
3.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4. 부패 또는 변질하기 쉬운 것
5. 범죄와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것
6. 일회용품성 물품
7. 물놀이 용품(유사 물품 다량 발생으로 인한 관리 차원)
8. 기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제 8 조(분실물(유실물) 공지기간 만료 후의 처리)

①보관기간이 6개월 경과된 반환되지 않은 분실물(유실물)은 웨이브파크 홈페이지 분실물 센터 내에 처리 완료로 진행하고 종류별로 나누어 폐기 전 물품으로 분리 보관하고, 기간은 30 일 간 보관한다.

②폐기처리는 연 2 회 9 월, 12 월로 정한다. 다만, 폐기 처리해야 하는 물품의 기간이 다른 경우 웨이브파크 서비스운영팀 부서장의 재량 하에 보관기관이 만료된 분실물(유실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처리방식)

①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은 '가까운 기부처'에 기증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건은 모두 폐기한다. 단, 재활용이 가능한 우산은 우산대여서비스를 위하여 웨이브파크 내에서 보관한다.

② 핸드폰, 고가 물품 및 귀금속의 경우 30 일 간은 웨이브파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며 이후는 관할 경찰서로 이관한다.

③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 신분증 및 신용카드는 발행기관에 문의한 후 폐기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폐기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며, 폐기 처리 시, 조치사항을 관리 대장에 기록한 후, 도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폐기한다.

④ 웨이브파크 특성 상, 보관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서핑 보드류 등 용품의 경우에는 공지 후 웨이브파크에서 자체 폐기 혹은 사내 기증한다.

부 칙 (2024.3.26 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년 4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